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9. 0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여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3.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국가재난안전교육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2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53조 앞의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삭제한다.

제65조를 제71조로 하고, 제59조를 제65조로 하며, 제51조를 제59조로 한다.

제60조를 제66조로 하고, 제52조를 제60조로 한다.

제61조를 제67조로 하고, 제53조를 제61조로 하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하고,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관리원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관리 및 보호·보안,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원장

을 보좌한다.

제48조(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운영,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소산 체계 운영·관리, 광주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제8장제54조, 제55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64조 앞의 “제13장 평가대상 조직”을 삭제한다.

제7장제49조, 제57조 및 제63조를 각각 제9장제57조, 제63조 및 제69조로 하고,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운영,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운영지원, 대구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관리

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

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중전의 제48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8조의2 앞의 “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을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대통령기록관

제50조(중전의 제48조의4) 중 “기록관”을 “관리원”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49조 앞의 “제7장 이북5도”를 삭제한다.

제50조 앞의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이북5도

제5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9조 앞의 “제12장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한다.

제8장제50조, 제58조 및 제64조를 각각 제10장제58조, 제64조 및 제70조로 한다.

제6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4조 및 제62조를 각각 제62조 및 제68조로 한다.

제55조 앞의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삭제한다.

제55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6조(중전의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
2. 관리원 소관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의 신기술 발굴·도입
3.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통신망 구축·도입
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관리
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

고 대응 및 사전 예방

6.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소산 체계 구축·운영

7.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8.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9. 정보시스템 통합운영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0. 관리원의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앞의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6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67조(종전의 제61조) 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56명을”을 “73명을”로 한다.

제14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7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한시정원

별표 1 중 “(제59조제1항 관련)”을 “(제6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60조제1항 관련)”을 “(제6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61조제1항 관련)”을 “(제67조제1항 관련)”으로, 총 계 “1,294”를 “1,631”로, 일반직 계 “1,283”을 “1,620”으로, 고위공무원단 “12”를 “1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239”를 “1,572”로 한다.

별표 4 중 “(제64조제1항 관련)”을 “(제7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라목(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제65조 관련)”을 “(제71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설관리형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경찰정비창
국방전산정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별표 1의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명칭, 소속, 직무, 총 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1호부터 제37호까지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u>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재난안전교육원</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u>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u>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④ ----- ----- ----- ----- ----- ----- ----- <u>국립과학수사연구원</u> ----- -----.
제28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28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② ----- ----- ----- ----- -----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 ④ (생략)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제33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 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u>국립과학수사연구원</u> · <u>국가정보자원관리원</u> 및 <u>국립</u> <u>재난안전연구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하부조직) ----- ----- ----- ----- ----- ----- <u>국립과학수사연구원</u> ----- ----- ----- ----- -----.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 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 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 관(<u>국립과학수사연구</u> · <u>국가정</u> <u>보자원관리원</u> 및 <u>국립재난안전</u> <u>연구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 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⑤·⑥ (생략)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국립과학수사연구</u> ----- ----- ----- ----- -----.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④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 ④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_____

-----국립과학수사연구원-----

_____.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7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신 설>

제46조 · 제47조 (생 략)

<신 설>

제47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관리원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51조 · 제52조 (현행 제46조 및 제47조와 같음)

제48조(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운영,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소산 체계 운영·관리, 광주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

<신 설>

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운영,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운영지원, 대구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관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구센터를 둔다.

② 대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

<신 설>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하부조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삭 제>

제8장 대통령기록관

제48조의2 · 제48조의3 (생략)

제4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북5도

<신설>

제49조 (생략)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신설>

제50조 ~ 제52조 (생략)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설>

제53조 · 제54조 (생략)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54조 · 제55조 (현행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과 같음)

제50조(하부조직) -----

---- 관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삭제>

제9장 이북5도

제57조 (현행 제49조와 같음)

<삭제>

제10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8조 ~ 제60조 (현행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1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61조 · 제62조 (현행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음)

<삭제>

제46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하 “관리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
2. 관리원 소관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 수립, 클라우드컴퓨팅의 신기술 발굴·도입
3. 국가정보통신망의 설계·운영 및 관리원의 보안시스템·통신망 구축·도입
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 지원 및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관리
5.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사전 예방
6.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재해 복구시스템 및 백업·소산 체계 구축·운영
7.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

8.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조진단

9. 정보시스템 통합운영관리체계의 구축·운영

10. 관리원의 기반시설에 대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로 정한다.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 설>

제57조 · 제58조 (생 략)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신 설>

제59조 · 제60조 (생 략)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

<삭 제>

제12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63조 · 제64조 (현행 제57조 및 제58조와 같음)

<삭 제>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65조 · 제66조 (현행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음)

제6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② -----

-----.

----- 73명-----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u>제62조</u> · <u>제63조</u> (생 략) <u>제13장 평가대상 조직</u> <u>제64조</u> (생 략) 제14장 <u>한시정원</u> <u><신 설></u> <u>제65조</u> (생 략)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u>제68조</u> · <u>제69조</u> (현행 제62조 및 제63조와 같음) <u><삭 제></u> <u>제70조</u> (현행 제64조와 같음) 제14장 <u>평가대상 조직</u> <u>제15장 한시정원</u> <u>제71조</u> (현행 제65조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6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	(제59조제 1항 관련)	(제65조 제1항 관 련)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6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	<u>(제60조제1항 관련)</u>	<u>(제66조제1항 관련)</u>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제61조제 1항 관련)	(제67조 제1항 관 련)	
총 계	<u>1,294</u>	<u>1,631</u>	+337
·	·	·	
·	·	·	
일반직 계	<u>1,283</u>	<u>1,620</u>	+337
고위공무원단	<u>12</u>	<u>16</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39</u>	<u>1,572</u>	+333
·	·	·	
·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u>(제65조 관련)</u>	<u>(제71조 관련)</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